부속서 6-가

팬데믹[1]의 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일반규정

1.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요구하며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 생계와 안전에 전례가 없고 심각한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함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그들의 개발 목표에 따른 정책 공간을 확보하며, 팬데믹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적절한 활동의 개발 가능성을 인정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식품, 중요 의료제품 및 개인보호장비와 같은 필수 상품의 운송 및 통관을 가능한 한도에서 시의적절하게,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식품, 의약품 및 중요 의료제품을 포함한 필수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조치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

5. 양 당사국은 팬데믹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라 공중보건을 지키면서, 국외 출장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

[1] **팬데믹**은 2020년 3월 11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질병을 지칭한다.

6. 양 당사국은 또한 서로에 대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국외 이동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7.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사람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존엄, 건강 및 안녕, 안전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하고 일하며 공부하는 서로의 국민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팬데믹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연대 강화

8. 양 당사국은 팬데믹 대응에 전 세계적인 연대와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인정하고, 양 당사국의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을 다룸으로써 팬데믹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연대와 상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9. 양 당사국은 팬데믹의 확산을 막고 통제하기 위하여,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경제 회복의 원활화를 위하여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10.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대로, 무역과 투자에 대한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1.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할 때, 관련 정보와 우수 관행을 가능한 한도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2.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경제 회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